

# 중개보수 요율표

※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·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◎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(서울특별시 기준)

## ◇ 주택
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중개보수 요율 결정	거래금액 산정
매매·교환	◎ 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◎ 중개보수 한도 = 거래 금액 × 상한 요율 (단,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	◎ 매매:매매가격 ◎ 교환: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
	◎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	
	◎ 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없음		
	◎ 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5	없음		
	◎ 9억원 이상	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		◎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 개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 정함.	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	◎ 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◎ 중개보수 한도 = 거래 금액 × 상한 요율 (단, 이 때 계산 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	◎ 전세:전세금 ◎ 월세: 보증금 + (월 차임×100). 단, 이 때 계산된 금액 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 보증금+(월 차임액× 70)
	◎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	
	◎ 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1천분의 3	없음		
	◎ 3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없음		
	◎ 6억원 이상	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		◎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 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 개 의뢰인과 개업공인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 정함.	

※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] × 상한요율

## ◇ 오피스텔
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(2015. 1. 6 공포·시행)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
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
나. 상·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것

[별표3]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(제20조제4항 관련)

구분	상한요율
매매/교환	1천분의 5
임대차 등	1천분의 4

2. 제1호 외의 경우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◇ 주택이외(토지, 상가 등)

거래내용	상한요율	중개보수 요율 결정	거래금액산정
매매/교환, 임대차 등	거래금액의 1천분의 ( ) 이내	○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	『주택』과 같음

※ 중개보수 한도 = 거래금액 × 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※ 개업공인중개사는 『주택의 매매·교환 9억원 이상』, 『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』, 『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·교환·임대차』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.

※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.